



시 보



제1514호 2021. 9. 13.(월)

훈 령

-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구정 일부개정 2

공 고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0

회람							
----	--	--	--	--	--	--	--

목포시 훈령 제 835 호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9월 13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일부개정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인감은 인감증명서(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대조 확인 후 대조필 표시를 한다.

제109조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2·26, 2004·2·16>

토 지 매 매 계 약 입 찰 유 의 서

제1조 (목적) 이 입찰유의서는 목포시도시개발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가 행하는 토지(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매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 이 입찰유의서는 토지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3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별지 목록의 토지는 당해 토지의 직전 소유자, 그와 관련되는 기업체, 기업주, 계열주, 친족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이 경우 그와 관련되는 기업체, 기업주, 계열주,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는“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제5조제1항제1호 별표 2 “동일계열기업군결정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 이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의 직전소유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4조 (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사업소가 입찰공고 등에서 지정한 용도 및 기간내에 반드시 토지사용에 착수할 자이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사업소의 소정양식)
2. 토지사용계획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5. 대리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법인의 경우 정관

제5조 (현물총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매입토지의 현물을 총람하여 제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자격 취소) 토지사용계획서를 조사한 결과 매각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소 임의로 입찰등록자격을 취소한다.

제7조 (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입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및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사업소에 귀속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입찰) ①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서명)은 입찰참가서에 제출한 인감(본인의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사업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찰당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거나 본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입찰가격은 총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정정하지 못하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제10조 (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의 취소, 철회, 교환, 반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신청을 하여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입찰
3.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5.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수령증을 동봉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8.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9. 입찰서에 기재한 금액, 기타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10.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11. 입찰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입찰
12.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사업소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제12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1인 이상의 입찰로 성립한다.

제13조 (개찰) 개찰은 소정의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행한다.

제14조 (낙찰자의 결정) ①사업소가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첨에 참가할 입찰자가 출두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에 관련없는 사업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한다.

제15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사항, 기타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6조 (입찰의 연기 등) ①사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①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2.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3. 3년 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사업소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5. 계약체결 후 소정의 의무사항 기타 이 입찰유의서나 계약서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사업소에 귀속되고 당해 토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의 회복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환매) ①사업소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전등기시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업소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한다.

②제2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매수인이 사업소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그 환매금액은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소가 수령한 매매원금 해당액에 환매시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 해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 (국세청에 통보) 사업소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소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전매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제23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1. 2. 26>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공고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인감날인 (서명)
	주소				

금번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한 토지매각건의 경쟁(일반·제한) 입찰, 수의계약 대상자 모집에 참가하고자 귀 사업소가 정한(입찰유의서·공급대상자 준수규칙)의 제조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일건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갖추어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토지사용계획서(계약체결시 제출)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부동산 매수용)
-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4. 대리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5. 법인의 경우 정관
- 6. 수납필통지서
- 7. 토지매매계약입찰유의서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장 귀하

..... 절 취 선

입찰참가신청접수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4·2·16>

명의 변경 신청서

토지의 표시

소재지					
필지번호		면적	m ²	용도	
계약체결일		계약자		계약방법	

귀 사업소에서 공급한 위 토지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매도인, 매수인 공동출석 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신청사유

2. 신청내용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비고
	주소		
매도인			
매수인			

신청인 매도인 ①

매도인 ①

- 첨부서류
1. 계약서
 2. 삭제 <2004·2·16>
 3. 주민등록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6. 명의변경을 요하는 상속·판결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7. 기타 필요한 서류

목포시 공고 제 2021-148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 유 : 목원동·북향동 행정복지센터 인증기 교체
- 2. 등록일 : 2021. 9. 8.(수)
-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목원동장인민원사무전용		2.1cm*2.1cm 푸른전남체	인증기용
등록	북향동장인민원사무전용		2.1cm*2.1cm 푸른전남체	인증기용
폐기	목원동장인민원사무전용		2.1cm*2.1cm 푸른전남체	인증기용
폐기	북향동장인민원사무전용		2.1cm*2.1cm 푸른전남체	인증기용

2021년 9월 13일

목 포 시 장